

소방생활법률-4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 소방생활법률에서는 일상 또는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1) 소방시설관리업자
-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3)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과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세부점검방법

-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

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호, 2012. 2. 3. 발령, 2012. 2. 5.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의무

-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및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를 첨부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

것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0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카목).

◇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비교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말점검
대상	<p>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p> <p>1) 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p> <p>2) <u>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p>
점검자 자격	<p>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p>	<p>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p> <p>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p> <p>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p>
점검 방법	<p>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p>	<p>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p>
점검 횟수	<p><u>연 1회 이상</u> 실시한다.</p>	<p>1) <u>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u> 실시한다.</p>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2)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해석례

안전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질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